

년 제 차(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정 보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①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 명	②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수 (①의 해당 기간 내 근로자 지원 개월 수의 합) 개월
	③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원	
신청 내용	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 (① × <고시금액> + ③) 원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작성방법

-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지원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text{개월}) \times 3(\text{명})] + [1(\text{개월}) \times 2(\text{명})] = 8\text{개월}$ 을 표시

- ③에 $\langle \text{해당 고시금액} \rangle / 31\text{일} \times 17\text{일}(1. 15. \sim 1. 31.) \times 3(\text{명}) + \langle \text{해당 고시금액} \rangle / 31\text{일} \times 27\text{일}(3. 5. \sim 3. 31.) \times 1(\text{명})$ 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년(분기, 월)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명세

[illegible]

작성 방법

1. 지원금 신청 연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15.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고시금액 예시)/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